

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(제9조제1항 본문 관련)

송신설비	허용편차	
	상한 퍼센트	하한 퍼센트
1. 방송국(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)의 송신설비	5	10
2.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설비	10	20
3.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의 송신설비	5	5
4. 해안국, 항공국 또는 선박을 위한 무선표지국의 송신설비로서 25.11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	10	20
5. 선박국의 송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.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405kHz부터 535k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나.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,605kHz부터 3,900k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		
6.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.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나. 생존정의 송신설비 다. 항공기용 구명무선설비 라. 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	50	20
7. 다음 각 목의 송신설비 가. 아마추어국의 송신설비 나.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다. 위성방송보조국의 송신설비 라.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송신설비 마. 주파수공용통신(TRS) 무선국의 송신설비 바. 영 제9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	20	-
8. 그 밖의 송신설비	20	50